## KOSHA GUIDE

C - 77 - 2013

- (마) 철근 조립작업 시 발생되는 개구부 등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 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바) 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(Lux)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1> 슬립폼 내부 야간조명 시설

- (사)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또는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하여 환기 등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 619조(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 등) 내지 제645조(안전대등)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8) 슬립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슬립업 작업 전에 콘크리트의 경화 깊이를 측정하고 탈형 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하중과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, 품질, 시공조 건 등을 고려하여 슬립폼의 슬립업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나) 슬립업 속도기준은 구조물의 강도와 형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 $10\sim17$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기온과 콘크리트 경화속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.
- (다) 슬립업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유압 잭이 균등하게 작동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.
- (라) 슬립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작업대는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.